

★ ○

더불어사는 화합기관리망 **성동**

문서번호	문화체육과-10763
결재일자	2015.5.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구청장 방침 제316호

지방행정주사	생활체육팀장	문화체육과장	행정관리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김도현	박석대	이현식	소판수	이비오	05/27 정원오
협조					

2015년도 성동구청 유도부 운영계획



성 동 구

(문화체육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 업 구 분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공약(약속)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센티브/공모사업 <input type="checkbox"/>
소 통 분 야 고 려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 민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전 문 가 : 유 <input checked="" type="checkbox"/> () 무 <input type="checkbox"/> ● 이 해 당 사 자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 타 고 려 사 항	일 자 리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환경영향 <input type="checkbox"/> 안 전 <input type="checkbox"/> 유지비용 <input type="checkbox"/> 바른 공공언어 <input type="checkbox"/> 성 인 지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input type="checkbox"/> 장 애 인 <input type="checkbox"/> 디 자 인 <input type="checkbox"/> 갈등발생 요인 <input type="checkbox"/>
타자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 앙 부 처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type="checkbox"/> ● 서 울 시 : 유 <input checked="" type="checkbox"/> () 무 <input type="checkbox"/> ● 기 업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type="checkbox"/> ● 민 간 단 체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type="checkbox"/>
언 론 홍 보 계 획	기획보도 <input type="checkbox"/> 보도자료 <input type="checkbox"/> SDTV <input type="checkbox"/> 성동뉴스레터 <input type="checkbox"/> 성동구소식지 <input type="checkbox"/> 기 고 문 <input type="checkbox"/> 전자행정서비스 <input type="checkbox"/> S N S <input type="checkbox"/> 기타(리플릿 등) <input type="checkbox"/> 없 음 <input type="checkbox"/>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성동구청 유도부 운영 계획

2015년도 성동구청 유도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선수단 사기를 진작하여 경기력을 향상함으로써 각종 대회에서 우리구 위상을 드높이고자 함

I 운영 개요

1. 관련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
- 제138차 서울시 정책회의 결정(2000.2.18.)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2조

2. 일반 현황

- 창 단 일: 2000. 12. 12.
- 합 숙 소: 성동구 상원길 77(성수동1가, 성수동우방아파트) 308호 / 115.41㎡

II 운영 계획

1. 성동구청 유도부

직책	직위	임무	비고
단장	행정관리국장	성동구청 유도부 대표 및 운영 총괄	
부단장	문화체육과장	단장 보좌	
간사	생활체육팀장	유도부 운영에 관한 일반업무 총괄	
감독		- 감독과 코치를 겸하여 성동구의 지시에 따라 선수를 지휘·감독 - 체계적·맞춤형 훈련계획 수립·시행 - 선수체력관리·경기지도 및 생활지도 일반 - 대회 출전 총괄 및 결과 평가·분석 - 우수선수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선수 (10인 이내)		- 각종 대회 참가와 훈련에 참가하고, 감독부재 시 주장 또는 감독이 지정한 1인이 자율훈련 주도 - 구청 주관 각종 행사와 자원봉사활동 참여 등	

2. 성동구청 유도선수단 구성

연번	성명	구분	입단일	2014년도 대회 성적	연봉액 (훈련비포함) 단위: 천원
1	 윤용발	감독	2007.1.1	-	34,802 (42,002)
2	 이나라	선수 (-70kg)	2010.1.1	- 전국실업유도선수권대회 1위 - 회장기전국실업유도연맹전 1위 - KBS전국체급별선수권대회 2위 - 춘계실업유도최강전 3위	42,228 (48,646)
3	 배슬비	(-48kg)	2013.1.1.	-	20,710 (27,910)
4	 박종원	(-78kg)	2015.1.1	- 여명컵전국유도대회 3위 - 청풍기전국유도대회 1위 - 전국실업유도최강전대회 2위	34,800 (42,000)
5	 서수빈	(-57kg)	2015.1.1.	- 춘계전국대학유도선수권대회 3위 - 하계전국대학유도선수권대회 3위	27,800 (35,000)

3. 근무조건

가. 복무일반

- ① 훈련은 합숙훈련을 원칙으로 한다.(※단, 감독은 출퇴근)
- ② 선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정기간 출퇴근해야 할 경우 감독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감독은 이를 지체없이 문화체육과에 통보한다.
- ③ 감독은 단장의 명령과 훈련계획에 따라 선수 훈련과 합숙생활 전반을 지도하며, 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참여와 대회출전을 명할 수 있다.
- ④ 선수는 단장과 감독의 지시에 따라 훈련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나. 훈련 및 대회참가

- ① 감독은 매월 말 선수를 지도·감독한 내용을 기재한 훈련일지를 문화체육과에 제출한다.
- ②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지·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내를 벗어나 합숙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과의 승인을 얻어 출장명령을 득하여야 한다.
- ③ 성동구청 유도부는 단장의 결정에 따라 대회에 출전하며, 출전키로 한 경기에 고의로 불참하거나, 연 3회 이상 불참한 자는 차년도 연봉계약에 반영하거나 재계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성동구는 대회참가를 위하여 출전격려금과 숙박비·교통비 등을 지급하고 입상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 연가 및 특별휴가

- ① 성동구청 유도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를 준용하여 연 8일 이내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남은 연가일수에 대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② 경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성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 규정에 의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③ 성동구청 유도부가 국내대회에서 반수 이상 입상하거나 국제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단장이 인정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때에는 선수단에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라. 급여

- ① 매월 공무원보수지급일(20일)에 연봉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한다.
- ② 매월 초, 기본훈련비(1인당 월600,000원)를 지급한다.
- ③ 익월 공무원보수지급일(20일)에 우수선수지원금(월1,000,000원)을 지급한다.
- ④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제2항에 의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재직하다 퇴직하는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퇴직연금을 적립한다.

마. 후생복지

- ① 4대보험(건강,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상해보험 가입으로 선수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 ② 합숙소 운영·관리에 필요한 운영비와 생활필수품 등 물품구매비를 지급하고 합숙소나 훈련에 필요한 물품과 부상방지용테이프 등을 구매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③ 컴퓨터, 인터넷, 정수기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 ④ 매년 직장건강검진을 실시한다.

III

예산편성

● 예산액: 금306,295천 원(시비 143,800천 원(47%) 구비 162,495천 원(53%))

(단위 : 천 원)

구분	계	인건비 및 처우개선	전지·합동훈련 대회참가비	입상보상금	피복비 훈련용품비	운영보조비	예비비
계	306,295	238,118	12,000	16,600	13,000	12,600	13,977
시비	143,800	108,023	6,000	8,600	7,000	6,600	7,577
구비	162,495	130,095	6,000	8,000	6,000	6,000	6,400

※ 전년대비 시비 24% 증가(전년 116,300)

● 지급방법

- 급여, 기본훈련비, 우수경기인지원금, 입상보상금 등은 개인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 대회 출전격려금과 숙박비, 운영비 등은 성동구청 유도부운영비통장(우리은행 1002-744-058343, 예금주 윤용발)으로 입금하고 연말에 정산한다.
- 유도부 운영비 통장 입금액은 대회출전격려금을 제외하고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선수단의 식사는 기본훈련비를 사용한다.
- 숙소관리비, 공공요금, 보험료 등은 납부고지서에 의거 지출한다.
- 피복이나 장비 등은 문화체육과에서 일괄 구매하여 지급한다.

- 연봉책정: 연봉조정 기준표(별표1)를 기준으로 선수성적을 참고하여 적정금액에 대한 쌍방협의 후, 매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연봉 조정
- 기본훈련비: 매월600천원/1인
 - 1일 30,000원 (주식비 20,000원 + 간식비 5,000원 + 목욕비 5,000원) × 20일 = 600,000원
- 4대보험: 부과고지서에 의거 납부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365)
- 우수선수 지원금:
 -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태릉선수촌에 입촌한 선수에게 지급
 - 월1,000천원(매월 1일 이상 입소시 지급)

① 급 여: 129,020,040원

- 감독(1명) : 운용발 2,900,170원 × 12개월 = 34,802,040원
- 선수(4명) : 이나라 3,519,000원 × 12개월 = 42,228,000원
 - 배슬비 1,725,830원 × 12개월 = 20,709,960원
 - 박종원 2,900,000원 × 12개월 = 34,800,000원
 - 서수빈 2,316,670원 × 12개월 = 27,800,040원

② 기본훈련비: 36,000,000원

- 36,000,000원 = 기본훈련비 600,000 × 12개월 × 5인
 - 기본훈련비(600,000원) = 일30,000원 × 월20일

③ 연금부담금 등: 17,737,320원

구 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운 용 발	93,780	130,500	287,220	157,650
이 나 라	113,790	158,350		
배 슬 비	55,800	77,620		
박 종 원	93,770	130,500		
서 수 빈	74,910	104,220		
월별합계	432,050	601,190		
총 합 계	5,184,600	7,214,280	5,338,440	

④ 퇴직금: 13,361,670천 원

- 감독(1명): 운 용 발: 2,900,170원
- 선수(4명): 이 나 라: 3,519,000원 배 슬 비: 1,725,830원
박 종 원: 2,900,000원 서 수 빈: 2,316,670원

⑤ 우수선수지원금: 10,000,000원

- 10,000,000원 = 1,000,000원 X 10개월 X 1인

⑥ 우수선수영입비: 10,000,000원

- 10,000,000x1인 = 10,000,000원

⑦ 상.하반기 격려금 = 10,000,000원

- 1,000,000원x2회x5인 = 10,000,000원

⑧ 주방도우미: 9,600,000원

- 800,000x12개월x1인 = 9,600,000원

⑨ 감독활동비: 2,400,000원

- 200,000x12개월x1인 = 2,400,000원

2

전지·합동훈련 및 대회참가비

12,000천 원

인정일수

- 합동·전지훈련: 최대15일
- 대회참가: 대회일(경기일정에 따라 +,- 1~2일 이내)
※ 대회일수: 여명킵전국유도대회 5일, KBS전국체급별선수권대회 2일, 전국체육대회 5일, 회장기유도대회 5일, 제주킵유도대회 4일, 춘·추실업연맹전 각 2일 등 7개

지급액 (숙박비 + 출전격려금 + 식비, 일비)

- 숙박비 1인 30천원/일, - 출전격려금(국내대회에 한하여 지급) 1인 60천원
- 식비 및 일비 1인 40천원/일

① 합동·전지훈련비: 금3,000,000원

- 3,000,000원 = 40,000원 × 15일 × 5인

② 대회참가: 금9,000,000원

(단위: 천 원)

대회명	일정	소요예산	숙박비 및 일, 식비	출전격려금	기타
여명컵전국유도대회	3월 10~14일	1,350	1,050=(70×3일)×5인	300 = 60 X5인	국가대표 선발2차전
춘계실업연맹전	5월	1,000	700=(70×2일)×5인	300 = 60 X5인	
청풍기 유도	6월	1,000	700=(70×2일)×5인	300 = 60 X5인	
KBS 전국체급별 선수권	6월 24~25일	1,000	700=(70×2일)×5인	300 = 60 X5인	국가대표 선발3차전
추계실업연맹전	9월	1,000	700=(70×2일)×5인	300 = 60 X5인	
전국체육대회	10월 28~ 11월 3일	300	-	300 = 60 X5인	
회장기 유도대회	11월 3~7일	1,350	1,050=(70×3일)×5인	300 = 60 X5인	국가대표 선발1차전
제주컵 유도대회	12월	2,000	700=(70×2일)×5인	300 = 60 X5인	항공료 1,000
총 계	8개대회			금 9,000천원	

3

입상보상금

16,600천 원

- 선수 입상보상금 : 입상보상금 지급기준 참조(별표)
- 감독 입상보상금
 - 국내대회 : 선수단 입상시 최고성적선수 입상보상금의 30%
- 성동구청 유도선수단 입상보상금
 - 국제대회 : 최고성적선수 입상보상금의 10%를 지급

① 선수 입상보상금: 금14,600,000원

입상 보상금 지급기준

(단위 : 천 원)

구분	등급	대회명	1 위	2 위	3 위
국내대회	A	- 전국체육대회 - 여명컵유도대회 - 청풍기 유도대회 - 체급별선수권대회 - 회장기유도대회	2,000 × 2명 = 4,000	1,000 × 2명 = 2,000	500 × 2명 = 1,000
	B	- 춘·추 실업연맹전	1,000 × 2명 = 2,000	500 × 2명 = 1,000	300 × 2명 = 600
	C	- 기타 국내대회	500 X 2명 = 1,000	300 X 2명 = 600	200 X 2명 = 400
국제대회	A	- 올림픽 대회 - 세계선수권대회	20,000 × 0명 = 0	10,000×0명=0	5,000 × 0명 = 0
	B	- 아시안게임	15,000 × 0명 = 0	8,000 × 0명 = 0	4,000 × 0명 = 0
	C	- 코리아오픈국제유도대회 (국가대표 출전)	2,500 × 0명 = 0	1,500 × 0명 = 0	1,000 × 1명 = 1,000

- 국내대회 : 1위 7,000,000원, 2위 3,600,000원, 3위 2,000,000원
- 국제대회 : 3위 1,000,000원
- 성동구청 유도선수단 입상보상금: 1,000,000원 = 10,000,000원 X 10%

② 감독 입상보상금: 금2,000,000원

4 **피복비 및 훈련용품비** **13,000천 원**

피복 및 훈련용품은 일괄구매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1인당 피복비: 2,000,000원
- ※ 유도복(500천원), 하계(500천원, 티셔츠, 반바지 등), 동계(1,000천원, 방한복 등) 지급품목은 스포츠용품으로 한정하며, 지급내용은 선수 개인 필요에 의해 정한다.
- 훈련용품비: 3,000,000원

- ① 피복비 : 2,000,000원 × 5명 = 10,000,000원
- ② 훈련용품비 : 부상방지용 테이프 등 3,000,000원

5 **운영보조비** **12,600천 원**

- ① 공공운영비: 6,000,000원
 - 숙소관리: 500,000원 × 12개월 = 6,000,000원
- ② 선수등록비: 3,000,000원
- ③ 차량보험: 1,000,000원
 - 차 량: 서울70라 5114(현대 중형승합, 12인승 스타렉스, 등록일 2008.1.15.)
 - 보험사: 삼성화재보험(2013.10.29.~2014.10.30.)

④ 유도부 상해보험: 800,000원

- 피보험자: 5인(감독1인, 선수4명)
- 보 험 사: 삼성생명(서소문법인지점 이형주 팀장 HP: *****)
- 보장내역

구 분		보장내역	비 고
일반사항		소 멸 형	
		3년 만기	
보험금수령자	사망 시	성동구청	
	상해 시	피보험자	
보 장 내 역	사망 시	2억 원	
	장해 시	1억 원	
	장해연금	1억 8천만 원	
	재해입원	6만 원	
	질병입원	3만 원	

⑤ 운영비 등: 1,800,000원

- 생필품 구매비 450,000원 × 4분기 = 1,800,000원(1,4,7,10월 지급)

6 **예비비 등** **13,977천 원**

① 생활가전제품 구입 및 기타 예비비: 12,777천 원

V **예 산 과 목**

- 문화체육과, 지역체육진흥, 전문체육육성, 직장운동경기부운영, 일반 보상금, 예술단원및운동부등보상금(301-10)

VI

행정 사항

1. 성동구 직장유도부 심사위원회 구성 · 운영

● 구성인원: 7명

- 위원장(1): 행정관리국장(단장)
- 위 원(6):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국장, 보건소장, 성동구체육회(3)
- 역 할: 유도부 운영에 관한 사항

2. 유도부 홍보

- 목 적: 구민에게 성동구청 유도부의 활동상을 알리고 선수의 자긍심 고취
- 내 용: 대회성과, 기록사진 등 홍보자료 수록 및 유도관련 자료제공
- 방 법: 소식지, 구 홈페이지 및 인터넷 방송국을 활용

3. 직장건강검진

VII

기 타

유도부 운영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하고, 예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2016년도 연봉조정 기준표

2016년도 연봉조정 기준							비고
1. 연봉등급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지도자	선수 (S급)	선수 (A급)	선수 (B급)	선수 (C급)	선수 (D급)	
연봉액	30,000 ~ 45,000	100,000 ~ 40,000	35,000 ~ 40,000	30,000 ~ 35,000	25,000 ~ 30,000	20,000 ~ 25,000	
※ 기본연봉: 기본훈련비를 제외한 당해연도 연간 총보수액 ※ 연 봉: 기본연봉+기본훈련비(연 7,200천원, 2014년 기준)							
2. 연봉조정 기준							
▷ 조정연봉액 = 기본연봉액 + (기본연봉액 × 조정률) 【조정률】 · 선수 : 평가표에 의한 개인별 조정률 적용(대회성적 반영) · 감독 : (선수최고조정률 + 선수최저조정률) / 2							
※ 대회실적, 지도력, 경기수준향상 및 종합적 판단에 의하여 단장이 총연봉의 3%를 가감할 수 있다.							
- 감 독: 평균차등조정률 + 지도력평점 + 기타 - 기존선수: 계약기간 성적을 반영하여 개인실적별 차등조정률 적용 - 신규임용: 신규채용시 방침에 의거 계약체결 - 벌칙적용: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1조 또는 제23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대회 불참 시 1회당 5점 감점 · 고의로 대회불참 3회 이상인 경우에는 연봉조정 대상에서 제외							

2016년도 연봉조정 기준

비고

○ 대회성적 기준표

대 회 명		1위	2위	3위	비 고
국내대회	전국체육대회	25	20	15	
	여명컵전국유도대회	25	20	15	국가대표 선발전
	KBS전국체급별선수권대회				
	청풍컵 전국유도 대회				
	회장기전국유도대회				
실업연맹유도대회 등 기타대회	20	15	10		
국제대회	올림픽대회	50	40	30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40	30	20	
	코리아오픈국제유도대회	30	20	15	

3. 차등조정률(국내대회)

구분 \ 등급	국 내 대 회									
	A	B	C	D	E	F	G	H	I	J
평가점수	100~91	90~81	80~71	70~61	60~51	50~41	40~31	30~21	20~11	10점 이하
차등조정률	10%	8%	6%	4%	2%	0%	-2%	-4%	-6%	-8%

※ 평가점수가 100점이 넘는 경우 차등조정률의 1/2 범위 내에서 추가지급 가능

4. 차등조정률(국제대회)

구분 \ 등급	국 제 대 회					
	A	B	C	D	E	F
평가점수	61~70	51~60	41~50	31~40	21~30	10~20
차등조정률	3%	2.5%	2%	1.5%	1%	0.5%

※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차등조정률의 1/2 범위 내에서 추가지급 가능

2015년도 대회 일정표 (예정)

구 분	대 회 명	운영보조비	비 고
1월		운영비-450,000원	유도복구매, 보험가입, 연맹가입
2월			동계훈련복, 부상방지용 테이프 구매 숙소 필요물품 구매(TV 등)
3월	여명컵전국유도대회(10~14) ※2014국가대표 2차 선발전 겸		
4월		운영비-450,000원	하계훈련복 구매
5월	실업연맹전(춘계)		
6월	KBS전국체급별선수권대회(24~25) ※2015국가대표 3차 선발전 겸 청풍기 유도선수권대회		
7월		운영비-450,000원	
8월			
9월	실업연맹전(추계)		
10월	제95회 전국체육대회(28~11.3)	운영비-450,000원	차량보험가입
11월	회장기전국유도대회(3~7) ※2014국가대표 1차 선발전 겸		
12월	제주컵 유도대회(미정)		